

NEW | 주요 법령 및 제도 변경 안내

1. 대체공휴일 확대적용 확정 (시행일: 2023. 5. 4. ~)

3월 중순 입법예고된 대체공휴일 확대적용에 관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의 적용이 확정적으로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연휴,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위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선거일, 수시지정일 제외)과 겹치는 경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p>* 2023년 5월 29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지정</p>

NEW | 주요 법령 및 제도 변경 안내

2.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변경 (시행일: 2023. 5. 1.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가 변경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단순노무행위의 종사가 가능합니다.

-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기존	<p>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p> <p>1. 일반기준</p> <p>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p> <p>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p>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신설	<p>2. 예외 기준</p> <p>○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3항제1호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고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F-4)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나목은 제한) <p>* 인구감소지역</p> <table border="1" data-bbox="240 1579 1484 2078"> <tbody> <tr> <td>부산(3)</td> <td>동구, 서구, 영도구</td> </tr> <tr> <td>대구(2)</td> <td>남구, 서구</td> </tr> <tr> <td>인천(2)</td> <td>강화군, 옹진군</td> </tr> <tr> <td>경기(2)</td> <td>가평군, 연천군</td> </tr> <tr> <td>강원(12)</td> <td>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td> </tr> <tr> <td>충북(6)</td> <td>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td> </tr> <tr> <td>충남(9)</td> <td>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td> </tr> </tbody> </table>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기존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NEW | 주요 법령 및 제도 변경 안내

3.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대책 시행 (시행일: 2023. 5. 3. ~)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확대됩니다.

- 주요 내용

개선방향		벌칙					
상습체불 근절	경제적 제재 강화	1. 상습체불 사업주 범위 확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기존</th> <th>변경</th> </tr> </thead> <tbody> <tr> <td>3년간 2회이상 유죄확정 + 1년간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명단공개)</td> <td rowspan="2" style="color: red; text-align: center;"> 최근 1년 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이상·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 </td> </tr> <tr> <td>3년간 2회이상 유죄확정 + 1년간 체불총액 2천만원 이상 (신용제재)</td> </tr> </tbody> </table>	기존	변경	3년간 2회이상 유죄확정 + 1년간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명단공개)	최근 1년 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이상·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	3년간 2회이상 유죄확정 + 1년간 체불총액 2천만원 이상 (신용제재)
		기존	변경				
	3년간 2회이상 유죄확정 + 1년간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명단공개)	최근 1년 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이상·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					
3년간 2회이상 유죄확정 + 1년간 체불총액 2천만원 이상 (신용제재)							
2. 제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 : 국가지차체 등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1년간) ② 공공입찰시 감점 : 국가지방계약법상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 부여 (1년간) ③ 신용제재 : 신용정보기관에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하여 금융기관별로 대출·이자율 심사 및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이익 부여 (1년간) 							
체불 감독·수사 강화	1. 포괄임금 감독 2. 체불 감독 3. 강제수사 4. 건설업 체불 감독						

자발적 체불 정산 유도	사업주 용자제도 활성화	<p>용자 요건 완화</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존</th> <th>변경</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용자요건</td> <td>일시적 경영상 어려움</td> <td>사유 무관 (임채법 개정 추진)</td> </tr> <tr> <td>1년 이상 사업 운영</td> <td>6개월 이상 사업 운영</td> </tr> <tr> <td>300인 이하 사업장</td> <td>모든 사업장</td> </tr> <tr> <td rowspan="3">지원내용</td> <td>사업주별 1억, 근로자별 1천</td> <td>사업주별 1.5억 근로자별 1.5천</td> </tr> <tr> <td>1년 거치</td> <td>1~2년 거치</td> </tr> <tr> <td>2년 분할상환</td> <td>3~4년 분할상환</td> </tr> </tbody> </table>	구분	기존	변경	용자요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사유 무관 (임채법 개정 추진)	1년 이상 사업 운영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300인 이하 사업장	모든 사업장	지원내용	사업주별 1억, 근로자별 1천	사업주별 1.5억 근로자별 1.5천	1년 거치	1~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3~4년 분할상환
	구분	기존	변경																
용자요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사유 무관 (임채법 개정 추진)																	
	1년 이상 사업 운영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300인 이하 사업장	모든 사업장																	
지원내용	사업주별 1억, 근로자별 1천	사업주별 1.5억 근로자별 1.5천																	
	1년 거치	1~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3~4년 분할상환																	
대지급금 등 제도 개선	<p>1. 관리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액채무·반복수급 사업장 집중회수 및 점검 - 장기 미회수 채권(5년 이상) 자산관리공사 위탁 <p>2.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별 지원한도 설정 등 합리화 추진 - 미회수금 신용제재 등 도입 <p>3. 지연이자제 대상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 근로자도 퇴직자와 동일하게 체불임금 지연이자 적용 																		
국민의 접근·편의성 강화	“노동포털”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p>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포털” 오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원스톱 대국민 노동행정 서비스 제공 - labor.moel.go.kr 																	
	임금명세서 교부 점검	모든 근로감독 시 임금명세서 교부여부·기재내용 등 필수점검																	

NEW | 주요 법령 및 제도 변경 안내

4. 2023년 제2차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모집일: 2023. 5. 1. ~ 2023. 5. 18.)

재택근무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재택근무 제도화를 지원하는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사업이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다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2023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장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원 비용	전액 무료	
지원 방식	컨설팅 수행기관의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지원 내용	1-2주차 기업진단	- 재택근무 가능 직무 발굴 - 인사담당자 등 면담, 재택근무 활용 목적 명확화 - 노조면담, 재택근무 도입 관련 근로자 입장 확인 - 간접노무비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계획 수립
	3-8주차 제도화 지원	- 노사협의 완료 - 재택근무 실시를 위한 사내운영규정마련신청, 승인절차, 근태관리 방안 등 - IT시스템 구축 및 활용 자문 - 정부지원사업 참여신청
	9-10주차 재택근무 시범운영	- 전직원 대상 재택근무 활용 관련 교육 실시 - 자율적인 조직문화, 관리자 리더십 향상 지원 - 재택근무자 선발, 시범활용(4주간) - 임금 등 성과평가체계 개선 지원
	11-12주차 사후관리	- 재택근무자, 인사담당자 등 면담, 문제점 도출 및 유형화 - 추가 개선방안 자문

제출·구비 서류	작성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신청서 - 컨설팅 수행계획서 -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자료 - 정부 주관 우수·인증 증빙자료(해당 기업에 한함)
관련 지원금 사업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지원	재택근무제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프라 설치비용 지원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 지원 (1년간 최대 360만원)

NEW | 주요 법령 및 제도 변경 안내

5.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 서비스 (운영일: 2023. 5. 2. ~ 2023. 11. 30.)

노사발전재단에서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통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차별예방 인식개선 교육' 및 '법정의 무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학습실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 (https://nosaedu.kacnet.co.kr)		
교육 내용	필수	기초	- 2023년 차별시정제도의 이해
	선택	심화	- 2023년 성차별예방 - 2023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 2023년 비정규직의 유형과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 2023년 차별없는 공정한 일터 - 2023년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 직종별 정기안전보건교육
		사업장 실무	- 근로시간관리실무 - 임금관리실무
	법정 (선택)	성희롱 예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	- 사례로 배우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산업안전보건	- 정기안전보건교육 2분기 - 정기안전보건교육 3분기 - 정기안전보건교육 4분기